

온라인 정책토론회

공익법인의 투명성 및 공익성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

일시 | 2020. 7. 1.(수) 15:00 ~ 17:20

장소 | 서울 명동 은행회관 국제회의실(2층)



공익법인의 투명성 및 공익성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

일 시 | 2020. 7. 1.(수) 15:00~17:20

장 소 | 서울 명동 은행회관 국제회의실(2층)

PROGRAM

시간	세부내용
14:30 ~ 15:00	• 등록
15:00 ~ 15:20	• 개회사 : 김유찬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원장 • 축사 :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15:20 ~ 16:00	• 주제발표 - 발표 1: 「공익법인의 투명성 제고 방안」 김완희 한국조세재정연구원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 소장 - 발표 2: 「공익법인의 공익성 제고 방안」 김무열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초빙연구위원
16:00 ~ 16:10	Break Time
16:10 ~ 17:10	• 전문가 토론 - 사회 : 이준규 경희대학교 교수 - 토론 : 구재이 한국납세자권리연구소장 박성환 한밭대학교 교수 변광욱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장 양동구 국세청 법인세과장 이동식 경북대학교 교수 최원석 서울시립대 교수, 한국정부회계학회장
17:10 ~ 17:20	질의응답
17:20	• 폐회

CONTENTS

• **개회사** i

김유찬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원장

• **축사** ii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발표1]

• **공익법인의 투명성 제고 방안** 1

김완희 한국조세재정연구원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 소장

[발표2]

• **공익법인의 공익성 제고 방안** 19

김무열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초빙연구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원장 김유찬입니다. 한국조세재정 연구원이 주최한 <공익법인의 투명성 및 공익성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 정책토론회에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이 자리를 빛내 주신 박용진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발표자와 토론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약 3만 5천개(2018년 기준 34,843개)의 공익법인이 있으며, 이 중 일정규모*를 갖춘 9,512개의 기관을 의무공시법인으로 지정 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몇몇 공익법인들의 회계부정의혹이 논란이 되면서, 기부금과 보조금을 받아 운영하는 공익법인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가 깨지지 않을까 우려스럽습니다.

* 2018년 기준 자산 5억원 이상 또는 연간 수입금액 3억원 이상의 공익법인

연간 6조원 규모의 기부금이 공익법인에 전달되는 상황에서, 기부금이 제대로 쓰이고 있다는 신뢰와 투명성이 깨지면 기부 문화가 위축될 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의 불신도 확대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공익법인의 투명성>

다행히 최근 공익법인회계기준이 도입되어 공익법인이 동일한 회계기준에 따라 재무제표를 작성하고 공시하게 되었습니다. 이제라도 공익법인의 회계정보가 투명하게 공개되고 또 비교 가능하게 된 점은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공익법인의 투명성을 보다 강화하고 재무정보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고민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선 지금보다 상세한 정보의 제공과 공시자료의 정합성을 개선할 필요가 있습니다.

<공익법인의 공익성>

한편, 공익법인은 공익적 역할을 수행한다는 측면에서, 다양한 세제혜택을 받는 동시에 공익활동을 담보하기 위한 제도적 의무도 지고 있습니다. 결국 공익법인의 공익성 강화는 국민의 세금과 자발적 기부가 공익법인을 통해 우리사회에 더 큰 혜택으로 돌아가는 것을 의미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공익법인의 관리체계가 잘 마련되어 있는지 점검하고 운영상 부족한 부분에 대해선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존경하는 내외귀빈 여러분, 오늘 토론회가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여러분의 활발한 논의를 통해 공익법인의 투명성과 공익성을 제고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자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이를 통해 앞으로 국민들의 선한 기부가 지속되고, 공익법인은 본연의 역할을 보다 충실히 수행하여 사회 일반의 이익에 이바지하는 모습을 기대해봅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주최로 열리는 “공익법인의 투명성 및 공익성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 정책토론회 개최를 축하합니다. 이번 토론회 준비를 위해 김유찬 한국조세재정연구원장님을 비롯한 임직원과 발표·토론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공익법인은 사회 일반의 이익에 이바지하기 위한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것으로 그 재산 또한 이러한 목적에 적합하게 사용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일부 재벌계열 공익법인들이 출연 받은 재산으로 출연자나 특수관계인이 발행한 주식 등을 매수하거나 이들과 거래를 통해 공익법인의 재산을 출연자와 특수관계자의 이익을 위해 이용해왔습니다.

대표적인 사례는 롯데 비자금 수사 과정에서 드러난 1973년 신격호 총괄회장이 매입한 3만 평의 토지를 2007년 롯데장학재단에 무상 증여한 이후 롯데그룹 계열사인 롯데쇼핑이 이를 1030억 원에 매입한 일입니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삼성생명공익재단이 출연받은 재산의 매각대금으로 삼성물산 주식을 매수한 일도 대표적인 사례로써 그 당시 총수일가의 지배력 강화에 공익법인을 동원했다는 비난을 받았습니다.

저는 공익법인의 재산을 출연자와 그 친족이 경영하는 법인에서 발행한 지분증권을 매수하거나 이들이 경영하는 법인과의 거래를 금지하는 공익법인법을 발의했습니다. 이 공익법인법이 통과된다면 이 규정을 위반한 공익법인에 대한 설립허가를 취소할 수도 있어 공익법인을 악용한 부당행위가 현저히 줄어들 것입니다.

아무쪼록 오늘 토론회에서 공익법인의 공익성 제고를 위한 전문가 여러분의 고견을 기대하며 이 토론회가 우리 사회에 건전한 기부문화 확산에 공헌하는 자리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끝으로 바쁘신 가운데 자리를 함께해주신 내외 귀빈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참석하신 여러분 모두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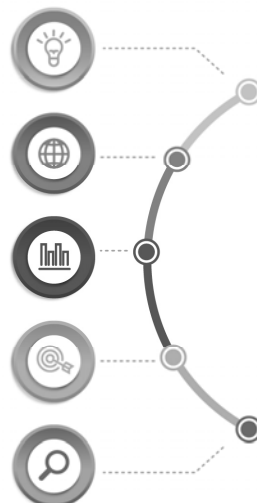
| 공익법인의 투명성 및 공익성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 |

[발표1]

공익법인의 투명성 제고 방안

김완희

한국조세재정연구원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 소장



공익법인 투명성 제고방안

부제 : 공익법인 재무분석을 중심으로

2020.7.



KPIF 한국조세재정연구원

CONTENTS

- 01 연구배경 및 연구계획
- 02 공익법인회계기준 도입 배경 및 효과
- 03 공익법인 재무현황 분석
- 04 공익법인 재무정보 활용 사례
- 05 공익법인 결산서류 공시 한계점 및 개선방안
- 06 결론



KPIF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연구배경 및 연구계획



KIPF 한국조세재정연구원

01 연구배경 및 연구계획

1. 연구배경

- ◆ 공익법인회계기준 도입으로 공익법인의 재무정보 비교 가능성 제고
 - 2019년 공익법인이 최초로 동일한 회계기준에 따라 재무제표 작성 및 국세청 공시
- ◆ 공익법인 전체(의무공시)에 대한 재무정보 분석
 - 공익법인회계기준 도입 이후 2019년 최초 공시한 재무정보 분석을 통해 공익법인 회계정보의 비교 가능성, 투명성 개선 등에 미친 영향 연구

2. 연구계획

- ◆ 공익법인회계기준 도입에 따른 효과 분석
- ◆ 국세청에 공시된 공익법인 재무현황(자산, 부채, 수익, 비용, 사업유형별) 분석
- ◆ 공익법인 재무정보 활용사례(대기업집단 분석 및 공익법인 재무건전성 지표 분석)
- ◆ 공익법인 결산서류 공시의 한계점과 개선방안 연구

공익법인회계기준
도입효과

재무현황 분석

재무정보 활용사례

한계점 및 개선방안

KIPF 한국조세재정연구원 | 4

01 연구배경 및 연구계획

3. 선행연구 및 연구차별성

가. 선행연구

◆ 공익법인의 회계투명성 개선에 대한 연구

연구자	연구내용
전규안 외 (2013)	비영리법인 회계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회계기준, 외부감사 등 회계제도 개선방안 제시
신현걸 (2018)	공익법인회계기준과 비영리조직회계기준의 비교하고 두 기준의 조화 방안 제시

◆ 대기업집단 공익법인에 대한 연구

연구자	연구내용
신성임, 윤재원(2015)	기업집단 주식을 보유한 23개 공익법인과 우수공익법인의 재무성과를 비교 분석하여 기업집단 산하 공익법인의 재무적 특성 분석
이교은, 최기호(2018)	기업집단 산하 공익법인 16개 기관의 공시 실태를 검토하고 문제점 및 개선안 제시

나. 연구차별성

- ◆ 공익법인회계기준 도입 이후 최초 공시한 재무자료를 활용하여 전체 공익법인의 재무 현황을 파악하고 이를 토대로 한계점 및 개선방안 도출
- ◆ 대기업집단 공익법인을 사업유형별로 세분화하여 자산규모가 유사한(100억 이상) 다른 공익법인과 비교 분석함

KIPF 한국조세재정연구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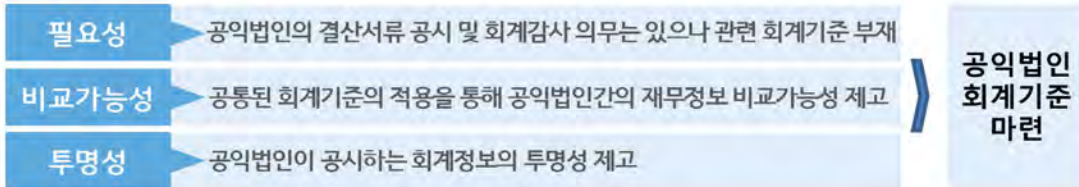
2 공익법인회계기준 도입 배경 및 효과



KIPF 한국조세재정연구원

02 공익법인회계기준 도입 배경 및 효과

1. 도입배경 및 제정 과정



- ◆ 2017년 12월 7일 공익법인 회계기준을 최종 고시하고, 2018년 1월 1일 이후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공익법인 회계기준을 적용함



02 공익법인회계기준 도입 배경 및 효과

2. 공익법인회계기준 도입 효과

가. 발생주의·복식부기 회계기준의 재무제표 작성

- ◆ 발생주의·복식부기 회계원칙에 따라 제정된 공익법인회계기준을 적용하여 기존 현금주의에서는 제대로 제시하지 못했던 공익법인의 자산과 부채를 인식할 수 있게 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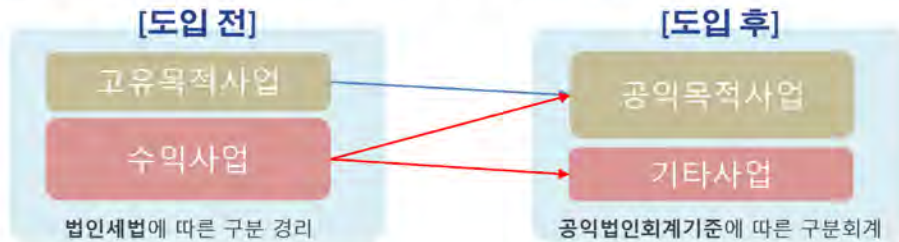
나. 동일한 회계기준 적용으로 재무제표 비교가능성 증대

- ◆ 공익법인회계기준을 적용한 통일된 형태의 재무상태표와 운영성과표를 작성·공시
 - 공익법인별로 제각각 적용하던 회계기준에서 공익법인회계기준을 적용하게 되어 공익법인의 재무제표 비교가능성이 증대됨
 - 특히, 동일한 기준에 따라 자산, 부채를 평가함에 따라 기관간 비교 가능성 증대(예를 들어, 과거에 유가증권 평가시 취득가액 또는 별도의 평가가액이 혼용되었으나, 동일한 평가기준 적용)

02 공익법인회계기준 도입 배경 및 효과

다. 공익목적사업과 기타사업으로 구분된 재무정보의 제공

- ◆ 재무제표 구분을 세법상 구분기준에서 공익법인의 실질적 운영현황을 명확히 나타낼 수 있도록 변경
 - 기존에는 공익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수익사업으로 구분되어 공익법인이 수익을 창출하는 사업에 집중하는 것으로 보이는 경향이 있었음



- "아름다운가게"의 경우 자원재순환사업(중고품판매)을 기존에는 기타(수익)사업으로 구분하였으나, 공익법인회계기준 도입 이후 공익목적(고유목적)사업으로 분류 변경하여 공익사업을 명확히 표시

수익	2018년	2017년
공익목적(고유목적)사업	293억원	68억원
기타(수익)사업	28억원	269억원

3 공익법인 재무현황 분석



03 공익법인 재무현황 분석

1. 재무현황 개요

가. 분석대상

◆ 본 연구에서는 전체 공익법인(2018년 기준 34,843개)* 중 의무공시 대상 공익법인**을 대상으로 국세청에 공시된 자료를 분석하였음

- * 2019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2018년 기준 공익법인 수
- ** 2018년 기준 의무공시대상: 자산 5억원 이상 또는 연간 수입금액 3억원 이상인 공익법인

● 의무공시법인은 총 9,512개 기관*으로

2019. 11.28 데이터 기준임

- 9,716개 기관자료 중 중복으로 공시한 24개 기관과 공공기관 180개를 제외한 수치

● 학술장학이 2,453개(25.8%)로 가장 많고, 사회복지 2,354개(24.7%), 교육 1,621개(17%) 등의 순

사업유형별 공익법인(의무공시)



◆ 또한, 공익법인 결산공시* 내용 중에서 재무제표(재무상태표, 운영성과표)에 한정해서 분석 수행

- * 공익법인이 공시해야 하는 서류에는 재무제표, 기부금 모집 및 지출 내용, 출연재산의 운용소득 사용명세 등이 포함됨

KIPF 한국조세재정연구원

03 공익법인 재무현황 분석

나. 재무총괄

◆ 공익법인의 총자산은 192조원 규모이며, 총부채는 47조원 수준임

- (자산) 교육 분야가 102조원으로 가장 크며, 학술·장학 24조원, 기타 20조원 등
- (부채) 교육 분야가 20조원으로 가장 크며, 문화분야가 1조원으로 가장 적음

◆ 총수익은 94조원, 총비용은 93조원으로 수익과비용의 규모가 거의 유사함

- 수익과비용은 교육 분야가 약 45조원 규모로 가장 크며, 의료 17조원, 사회복지 11조원, 기타 10조원, 학술·장학 7조원 등의 순으로 나타남

자산·부채·수익·비용 현황

구분	사업유형별						총계	평균
	교육	문화	사회복지	의료	학술·장학	기타		
자산	102.4	7.7	17.8	20.3	23.8	20.0	192.1	202억원
부채	20.3	1.1	3.2	13.0	3.3	5.6	46.5	49억원
수익	44.7	2.4	11.3	17.2	7.3	10.6	93.5	98억원
비용	45.2	2.4	11.1	17.1	7.1	10.2	93.1	98억원

KIPF 한국조세재정연구원

03 공익법인 재무현황 분석

2. 주요 계정별 분석

가. 자산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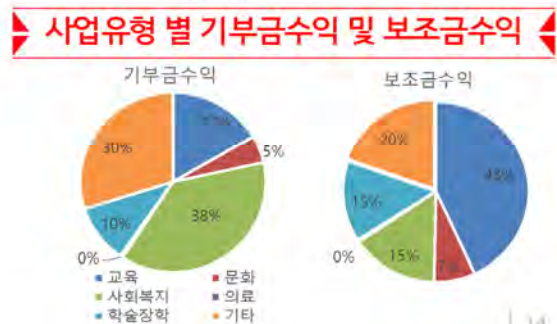
- ◆ (교육/의료) 학교와 병원을 운영하는 공익법인은 토지와 건물 비중이 높음
- ◆ (문화) 금융자산(34.1%), 주식(29.5%) 비중이 높으며, 박물관 소장자료, 미술품 등으로 인해 기타자산(19.3%) 비율도 높은 편
- ◆ (학술·장학) 기금운용 수익금으로 장학금을 지원하는 기관들로 총 자산 중 금융자산(55.3%), 주식(22.1%)의 비중이 높은 특징이 있음



03 공익법인 재무현황 분석

나. 사업수익 분석

- ◆ 공익법인의 사업 수익 중 기부금수익 7%, 보조금수익은 18%에 그친 반면, 공익목적사업 기타수익 38%, 기타사업수익 35% 등 공익법인의 자체 수익 비중이 높은 편
 - 자체 수익은 주로 등록금수익, 병원 의료수익, 투자자산 수익 등으로 구성
- ◆ 기부금 및 보조금수익 현황
 - (기부금수익) 총 6.1조원으로 사회복지 분야가 38%로 가장 비중이 높고, 의료 분야는 거의 없음
 - (보조금수익) 총 15.6조원이며, 교육 분야가 43%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함



03 공익법인 재무현황 분석

다. 사업비용 분석

- ◆ 사업비용 중 공익목적사업비용(사업수행비용, 일반관리비용, 모금비용)은 66.9%이며, 기타사업비용은 33.1% 수준임
- (공익목적사업비용) 사업수행비용(56%), 일반관리비용(11%), 모금비용(0.3%) 순으로 모금비용의 경우 전체 사업비용의 1% 미만으로 거의 발생하지 않음
- (기타사업비용) 병원운영에 따라 기타사업비용이 많이 발생한 의료(53.8%), 교육(37.7%) 때문에 비중이 높게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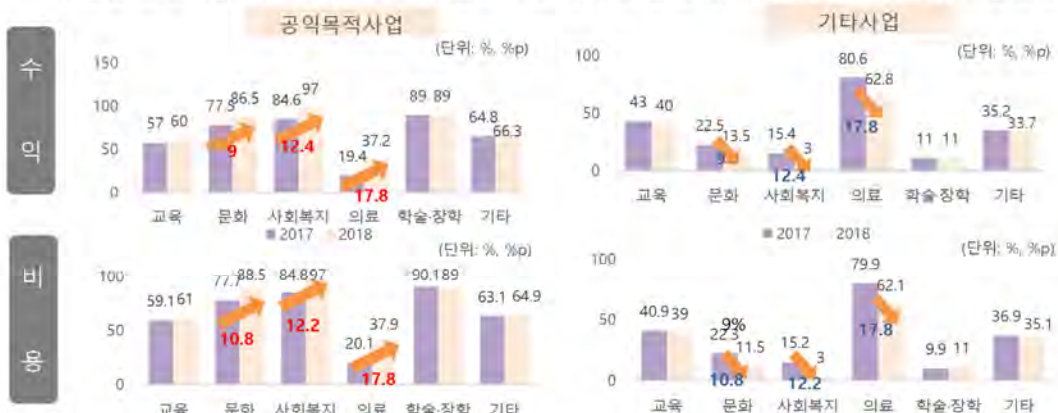
사업유형 별 사업비용 구성 현황



03 공익법인 재무현황 분석

3. 구분회계 재무정보

- ◆ 구분회계 기준변경으로 인한 공익목적사업 비율 변화
- (비중 변화) 구분회계 기준 변화에 따라 기존 기타(수익)사업에서 공익목적(고유목적)사업으로 분류변경되어 공익목적사업 부분의 비율이 크게 증가
- 병원을 운영하는 의료사업, 박물관, 연주회·전시회 등 운영에 따른 입장료 수입 등 구분변경



* 2017년 자료는 NPO가이드스타 27호(2018년 10월) 고유목적사업, 수익사업 참고
 ** 2018년은 국세청에 공시된 공익목적사업, 기타사업 자료 참고

4 공익법인 재무정보 활용사례



KIPF 한국조세재정연구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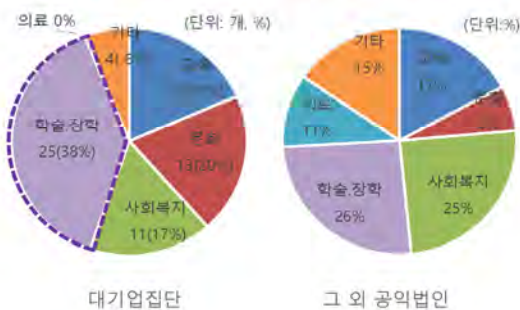
04 공익법인 재무정보 활용사례

1. 대기업집단 공익법인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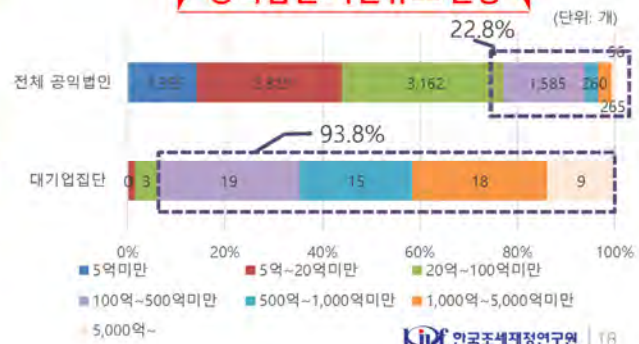
가. 총괄

- ◆ 대기업집단 공익법인은 총 65개로 전체 공익법인(9,512개)의 0.7% 임
 - 2019년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발표한 2019년 공시 대상 기업집단 주식 소유현황 중 비영리법인 출자내역 참고
 - (사업유형) 대기업집단의 경우 학술·장학(25개, 38%)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
 - (자산규모) 대기업집단의 경우 1,000억원 이상이 27개이며, 100억원 이상도 61개(93.8%)에 달함

사업유형 별 공익법인 현황



공익법인 자산규모 현황



04 공익법인 재무정보 활용사례

◆ 대기업집단 공익법인과 그 외 공익법인의 평균 재무현황 비교

• 대기업집단 공익법인과 자산규모가 유사한 자산총액 100억원 이상의 공익법인(2,105개)

- 대기업집단 공익법인 평균 자산규모(2,621억원)와 그 외 공익법인 평균 자산규모(742억원)는 약 3.5배 차이를 보이며, 특히 사회복지와 문화 분야 규모 차이가 큼
- 비용 평균 규모 차이는 약 2.6배로, 자산규모 차이에 비하여 적은 편

사업 유형별 평균 재무현황 비교



KIPF 한국조세재정연구원 19

04 공익법인 재무정보 활용사례

나. 대기업집단 공익법인의 재무분석

◆ 자산 구성 현황

- 대기업집단 공익법인의 총자산 대비 주식 및 출자지분 비중은 42.4%로 그 외 공익법인(4.3%)에 비하여 약 9.9배 높음
- 반면, 유형자산은 대기업집단(토지:4.9%, 건물 12.8%), 그 외 공익법인 (토지:22.1%, 건물 27.6%)로 대기업집단 공익법인의 유형자산 보유비중이 상대적으로 낮음

자산 구성 현황 비교



KIPF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

04 공익법인 재무정보 활용사례

◆ 자산대비 주식비율

- 자산에서 주식이 차지하는 비중을 사업유형별로 분석한 결과 대기업집단 공익법인 중 학술·장학(62.7%)과 문화(56.1%)가 매우 높은 수준임



◆ 자산 대비 공익사업 등 지출 비율

- 자산의 사업활용 수준을 검토하기 위해 자산 대비 공익사업 등에 지출한 비용(사업비용)을 분석한 결과 주식비율이 높았던 학술·장학(3.6%)과 문화(3.9%)가 매우 낮은 수준으로 확인



대기업집단 공익법인 중 학술·장학 및 문화의 경우 보유한 주식의 가치 대비 공익사업 운영에 기여하는 부분은 상대적으로 적어 이에 대한 면밀한 검토 필요

04 공익법인 재무정보 활용사례

◆ 주식과 배당수익 현황

- 대기업집단 공익법인의 주식및출자지분은 총 7.2조원 규모이고 배당수익은 0.2조원으로 배당수익률은 평균 2.6%에 그침

▶ 주식 및 배당수익 규모

(단위: 억원)

구분	교육	문화	사회복지	학술·장학	기타	총합계
주식및출자지분 (A)	15,967	20,599	19,608	15,909	174	72,257
배당수익 (B)	495	547	461	396	8	1,907
배당수익률 (B)/(A)	3.1%	2.7%	2.3%	2.5%	4.8%	2.6%

- 기관별 배당수익률을 살펴보면 2% 미만인 기관이 35개이며, 14개 기관의 경우 배당수익이 전혀 없음

▶ 기관별 배당수익률 분포

(단위: 기관 수)

0	0~1% 미만	1%이상 ~ 2%미만	2%이상 ~ 3%미만	3%이상 ~ 5%미만	5%이상	총계
14	10	11	11	10	9	65

04 공익법인 재무정보 활용사례

2. 해외 비영리법인 평가기준 공익법인 적용

◆ 채리티 네비게이터(Charity Navigator)의 비영리법인 평가기준

- 채리티 네비게이터는 비영리법인의 재무건전성을 평가하기 위해 7가지 평가지표 마련
- 7가지 평가지표 중 국내 공익법인에 적용할 수 있는 지표 선정하여 분석

▶ 재무건전성 평가지표 ◀

	평가지표	지표 선정
재무효율성 지표	프로그램비용 비율	0
	관리비용 비율	0
	모금비용 비율	0
	모금 효율성 비율	0
재무역량 지표	프로그램 비용 증가율	
	운전자본 비율	
	부채 대 자산 비율	0

KIP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3

04 공익법인 재무정보 활용사례

◆ 평가지표 적용결과

- 채리티 네비게이터 평가지표별 기준을 적용해 10점 만점과 0점 공익법인 집계

▶ 평가지표 적용결과 ◀

평가지표	만점 기준	공익법인 수	0점 기준	공익법인 수
프로그램비용 비율	85% 이상	5,312 (64.9%)	50% 미만	1,286 (15.7%)
관리비용 비율	15% 미만	5,397 (65.9%)	30% 이상	1,849 (22.6%)
모금비용 비율	10% 미만	8,075 (98.6%)	25% 이상	42 (0.5%)
모금효율성	0.1원 미만	4,824 (96.2%)	0.5원 이상	91 (1.8%)
부채 대 자산 비율	5% 미만	5,034 (52.9%)	100% 이상	361 (3.8%)

- 프로그램비용, 관리비용, 모금비용 비율 계산 시 공익목적사업비용이 없는 공익법인은 제외
- 모금효율성 계산 시 기부금수익이 없는 공익법인 제외

KIP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3

04 공익법인 재무정보 활용사례

3. 소결

- ◆ 공익법인 재무정보를 활용한 대기업집단 공익법인 재무분석
 - 대기업집단 공익법인은 일반 공익법인보다 상대적으로 규모가 크고 자산 중 주식의 비중이 높은 특징을 보임
 - 또한, 대기업집단 공익법인은 자산 규모 대비 공익사업 등에 지출되는 비용 수준(32.0%)이 일반 공익법인(44.2%)에 비해 낮은 것으로 분석됨
 - 특히 대기업집단의 학술·장학(3.6%) 및 문화(3.9%) 유형에서 공익법인 사업에 자산이 적게 활용
 - 마지막으로 대기업집단 공익법인이 보유한 주식에서 창출되는 배당수익이 적어 공익사업의 실질적인 운영에 있어 주식의 활용은 제한적인 것으로 분석
- ◆ 채리티 네비게이터의 비영리법인 평가지표를 통해 공익법인 분석
 - 평가기준 최저점에 해당하는 지표를 보이는 공익법인은 원인분석을 통한 개선 필요

5 공익법인 결산서류 공시 한계점 및 개선방안

05 공익법인 결산서류 공시 한계점 및 개선방안

1. 기타수익 비중 과다 → 사업수익 세분화를 통한 수익 재원 명확화

- 사업수익의 구성현황 분석 결과 매출액(34.6%)과 기타수익(36.3%)의 비중 높음
 - 매출액, 기타수익이 사업수익의 큰 비중을 차지하지만 세부내역 파악이 용이하지 않음
- 매출액과 기타수익을 세분화하여 정보이용자에게 효과적인 정보제공 필요

(단위: %)

	기부금수익	보조금수익	회비수익	투자자산수익	매출액	기타수익
공익	10.7	26.8	35	2.1	17.2	39.7
기타	0	0	0	3.0	65.4	31.0
총합	6.8	17.5	23	2.4	34.6	36.3

운영성과표 (현행)	→	운영성과표 (개선안)
사업수익		사업수익
...		...
매출액		판매수익
기타		임대료수익
		등록금수익
		입장료수익
		요양급여수익
		의료수익
		연구수익
		기타

KIPF 한국조세재정연구원 | 27

05 공익법인 결산서류 공시 한계점 및 개선방안

2. 성격별 구분의 제한적 정보 → 사업비용 세분화로 풍부한 정보 제공

- 사업비용의 성격별 구분을 통해 직관적으로 이해하기는 쉬우나, 세부내역을 파악하기 어려움
- 분배·인력·시설·기타비용의 세분화를 통해 효과적인 정보 제공 필요

<개선안>

	사업수행비용	일반관리비용	모금비용	기타사업비용
분배비용	11.8	-	-	-
인력비용	20.5	5.7	0.1	13.7
시설비용	4.0	1.6	0.0	2.5
기타비용	19.6	3.4	0.2	16.9

(단위: %)

구분	구분	
분배비용	장학금	xxx
	지원금	xxx
	기타	xxx
인력비용	급여	xxx
	퇴직급여	xxx
	복리후생비	xxx
	기타	xxx
시설비용	감가상각비	xxx
	지급임차료	xxx
	유지관리비	xxx
	기타	xxx
기타비용	여비교통비	xxx
	지급수수료	xxx
	용역비	xxx
	업무추진비	xxx
	기타	xxx

KIPF 한국조세재정연구원 | 28

05 공익법인 결산서류 공시 한계점 및 개선방안

3. 재무정보 정합성 오류 ➡ 시스템 개선 및 모니터링 강화를 통한 신뢰성 강화 가. 현황 및 한계점

- ◆ 결산서류 공시서식 및 재무제표의 정보가 일치하지 않는 사례
 - 공시서식 및 재무제표에 총자산가액 구분이 다르게 기재된 사례
- ◆ 재무상태표의 자산총액과 부채+순자산 총액이 일치하지 않는 사례
- ◆ 운영성과표의 체계에 따라 산출한 당기운영이익 금액과 기재한 당기운영이익이 불일치한 사례
- ◆ 재무제표 서식에 있는 계정과목을 사용하지 않고 기타계정에 동일한 계정을 추가한 사례

▶ 재무정보 불일치 사례 ◀

결산서류 공시서식		재무상태표	
2. 재무현황		3. 자산현황	
구분	18총자산가액	구분	25총자산가액
㉠ 총계 (㉠=㉡+㉢)	2,655,693,463	㉠ 총계 (㉠=㉡+㉢)	2,655,693,463
㉡ 공익목적사업	2,655,693,463	㉡ 공익목적사업	2,437,693,463
㉢ 기타사업	0	㉢ 기타사업	218,000,000

재무제표	
구분	자산총계
통합	2,655,693,463
공익목적사업	0
기타사업	0

KIPF 한국조세재정연구원 | 29

05 공익법인 결산서류 공시 한계점 및 개선방안

3. 재무정보 정합성 오류 ➡ 시스템 개선 및 모니터링 강화를 통한 신뢰성 강화(계속) 나. 개선방안

- ◆ 공익법인 결산서류 공시 작성 시스템의 자동검증기능 등 개선 필요
 - 회계 전담인력이 부족한 공익법인의 작성오류 개선을 위해 주요 오류사례 자동검증 시스템 마련
 - 재무상태표 대차검증, 운영성과표 당기운영손익 검증
- ◆ 결산서류 공시서식과 재무제표 데이터 연동
 - 재무제표에 금액을 입력하면 결산서류 공시서식에 자동으로 기입되도록 시스템 개선
 - 공시 서류 간 데이터 불일치 오류 개선 및 동일 내용 중복 작성 부담 경감
- ◆ 국세청의 공익법인 결산서류 모니터링 기능 강화
 - 세금 탈루 방지 목적 이외에도 공시된 공익법인 결산서류가 정확히 되었는지 국세청의 모니터링 기능을 보다 강화

KIPF 한국조세재정연구원 | 30

06 결론

- ◆ 공익법인회계기준이 최초 적용된 재무정보를 활용한 재무분석
 - 통일된 회계기준 적용에 따라 기관간 비교가능성 및 재무분석이 개선되었고, 사업유형별 분석, 주요 계정별 분석 및 재무지표 적용 등이 가능해짐
 - (대기업집단 분석결과) 주식 보유 비중이 매우 높은 반면, 사업운영에 활용되는 비율은 상대적으로 적어 주식 비중이 높은 기관의 공익사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필요
 - (해외평가지표 적용결과) Charity Navigator 재무건정성지표 적용 결과 항목별로 최저점에 달하는 기관이 상당해서 이에 대한 추가 원인분석 및 제도개선 필요
- ◆ 보다 상세한 정보제공을 통해 공익법인의 투명성 강화 필요
 - 공익법인 재무정보 분석을 위해서는 더 자세하고 다양한 유형의 정보 필요
 - 특히, 사업수익 및 사업비용을 세분화해서 공익법인 운영결과의 상세한 정보공개 필요
- ◆ 공시 자료의 정합성 개선으로 공익법인의 재무정보 신뢰성 제고 필요
 - 재무분석시 활용된 공시자료에서 다수의 오류가 발견되어, 이를 개선하기 위해 공시시스템의 자동검증기능 강화, 결산서류 연계기능 강화, 결산서류 모니터링 강화 제안

KIPF 한국조세재정연구원

감사합니다



KIPF KOREA INSTITUTE OF PUBLIC FINANC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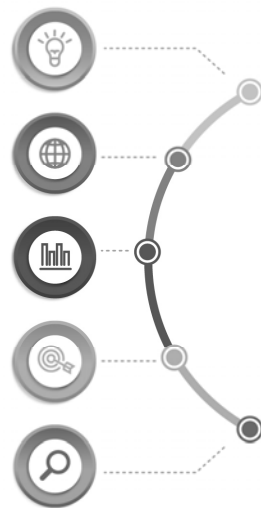
| 공익법인의 투명성 및 공익성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 |

[발표2]

공익법인의 공익성 제고 방안

김무열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초빙연구위원



공익법인의 공익성 제고 방안

2020. 7. 1

초빙연구위원 김무열



KPIF 한국조세재정연구원

CONTENTS

1. 들어가는 말
2. 공익법인 관리체계 구축
3. 공익법인의 주식취득 및 보유 완화: 의무지출강화
4. 나오는 말



KPIF 한국조세재정연구원

1 들어가는 말



1. 들어가는 말

- ◆ 공익법인이라 함은 사회일반의 이익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설립·운영되는 사단 또는 재단법인을 의미함(이 글은 상증세법상 '공익법인 등'중 법정외법인으로 한정함)
- ◆ 공익법인은 공익을 추구한다는 측면에서 다양한 세제혜택을 받고 있음(상증세 과세가액 불산입,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 부가가치세 면세 등)
- ◆ 이와 함께 공익법인의 공익활동을 담보하기 위해 다양한 제도적 장치가 있음(공익성 심사, 주식 취득 및 보유 제한, 의무지출제도)
- ◆ 이하에서는 공익법인의 공익성 제고를 위한 주요 쟁점으로서 공익법인 관리체계 구축의 필요성, 주식출연과 관련된 사안 등을 살펴봄

2 공익법인 관리체계 구축



KIPF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 공익법인 관리체계 구축

1. 현행 제도의 문제점

- ◆ 현재 설립신청시 주무부처가 하는 허가심사는 주무부처 개별 과의 담당자가 수행하지만, 주무부처 내에서도 허가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심사의 전문성과 일관성이 결여됨(설립허가주의)
- ◆ 공익법인의 공익활동여부에 대해서는 주무관청과 납세지 관할 세무서가 서로 교차체크를 할 수 있도록 제도적 상태가 구비되어 있지만(상증세법 제48조 제6항 및 제7항, 민법 제37조) 주무관청의 감독권행사는 미미한 상황이며, 납세자에게 유사한 서류를 이중으로 제출하도록 하여 부담이 됨
- 공익성 판단기준이 개별법에 분산되어 있으며, 체계적이지 않음

KIPF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 공익법인 관리체계 구축

2. 개선방안

◆ 형식적 심사기준으로서 모델정관 도입

- 최소한의 서류심사(정관, 사업계획서 등)로 신청에 따라 수리를 해주는 인가주의의 도입 필요(미국의 조직테스트에 해당함)
- 정관의 필요적 기재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한 모델정관을 사용하는 방안이 있을 수 있음(목적, 최우선으로 고유목적사업을 수행하고(부차적으로 수익활동 가능), 특정인에 대한 이익제공을 금지하고 수혜자가 불특정 다수이며, 잔여재산처분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독일의 입법례 참고)

2. 공익법인 관리체계 구축

<공익법인 모델 정관안>

이 모델 정관안은 2016년 국회사회공헌포럼 법률정책위원회 공익법인제도개선소위원회에서 저자가 독일의 모델 정관을 소개하였고, 소위원회에서 전문가의 논의를 거쳐 우리나라 현실에 맞게 구성된 것이다. 또한, 2017년 2월 6일에 발의된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5442)에 첨부되었다.

제1조(명칭 및 주소지) 이 정관에 따른 법인은 ○○공익사단(재단)법인으로서, ○○시에 주소지를 둔다.

제2조(목적) 법인의 목적은 ○○○이다.(「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 공익목적사업을 말한다)

1. ○○○

2. ○○○

제3조(목적사업) 법인의 정관상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한다.

1. (제2조 제1호를 실현하기 위한 사업을 말한다)

2. (제2조 제2호를 실현하기 위한 사업을 말한다)

2. 공익법인 관리체계 구축

제4조(운영기본원칙) ① 법인은 사회 일반의 이익을 위하여 이타적으로 운영하며, 경제적 이익을 최우선적 목적으로 해서는 아니 된다.

② 법인의 수단은 정관상 목적만을 위해서 사용해야 하며, 구성원은 법인으로부터 어떠한 특별한 이익을 받을 수 없다.

③ 법인은 정관상 목적에 반하는 지출을 해서는 아니 되며, 이사, 감사, 사원, 사용인 등에 대한 보수 등이 상당성을 결여하여 부당하게 고액이 되지 않도록 지급기준을 정해야 한다.

④ 법인은 어떠한 정치활동(정치인 후원, 지원, 홍보 등을 포함한다)을 해서는 아니 된다.

⑤ 매년 공익목적사업에 일정액(매년 운영재산의 100분의 5 이상 또는 존립기간 동안 균등액 이상)을 지출해야 한다(사단법인은 제외한다).

⑥ 불법적이거나 기본적인 공공정책을 위반하는 활동이나 목적을 가지지 아니한다.

제5조(잔여재산귀속) 법인이 해산 또는 청산하거나 공익인정이 취소되는 경우에 법인의 잔여재산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귀속시킨다.

2. 공익법인 관리체계 구축

◆ 실질적 심사를 위한 판단기준마련: 단일법에 기준을 제정한 일본법을 참고할 수 있음 (송호영, 『비영리법인의 관리·감독 강화 방안 연구』, 법무부 연구보고서, 2017, pp. 138~140.)

① 공익목적사업을 행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할 것

② 공익목적사업에 필요한 경리적 기초 및 기술적 능력을 갖추고 있을 것

③ 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사원, 평의원, 이사, 감사, 사용인 기타 정령으로 정하는 당해법인의 관계자에 대해서 특별한 이익을 부여하지 않을 것

...

⑤ 미풍양속을 해하는 사업, 투기적인 거래, 고리의 용자사업, 기타 공익법인의 사회적 신용을 유지하는 데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서 정령으로 정한 것이나 공공의 질서, 선량한 풍속을 해할 우려가 있는 사업을 하지 않을 것

...

⑧ 그 사업 활동을 행하는 데 제15조에 규정하는 공익목적사업비율이 100분의 50 이상이 될 것으로 예상될 것

2. 공익법인 관리체계 구축

⑩ 각 이사에 대해서 그 이사 및 그 배우자 또는 3촌 이내의 친족(이들에 준하는 자로서 그 이사와 정령으로 정한 특별한 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인 이사의 합계 수가 이사의 총 수의 3분의 1을 넘지 않을 것 (감사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임)

...

⑬ 그 이사, 감사 및 평의원에 대한 보수 등(보수, 상여 기타 직무수행의 대가로서 받은 재산상의 이익 및 퇴직수당)에 대해서 내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민간사업자의 임원의 보수 및 종업원의 급여, 그 법인의 경리상황 기타 사정을 고려하여 부당하게 고액이 되지 않도록 지급기준을 정하고 있을 것

...

⑰ 공익인정의 취소처분을 받은 경우 또는 합병에 의해 법인이 소멸할 경우(그 권리·의무를 승계하는 법인이 공익법인인 때를 제외함)에 있어서 공익목적취득재산잔액이 있는 때에는, 여기에 상당하는 액의 재산을 그 공익인정의 취소일 또는 그 합병일로부터 1월 이내에 유사한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다른 공익법인 또는 다음에 열거하는 법인 또는 국가 또는 지방공공단체에 증여하는 취지를 정관으로 정하고 있을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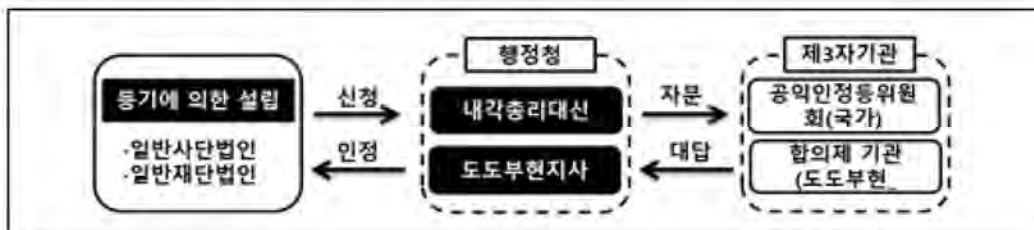
⑱ 청산할 경우에 잔여재산을 유사한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다른 공익법인 또는 제17호의 (i) ~ (vii)에서 열거한 법인 또는 국가 또는 지방공공단체에 귀속시킨다는 취지를 정관으로 규정하고 있을 것

2. 공익법인 관리체계 구축

◆ 실질적 심사는 전문성과 일관성을 갖춘 심사 기관으로 일원화하고, 심사 기관의 심사 결과에 따라 주무관청은 형식적인 인가와 인가취소만 하는 방안

• 일본의 공익법인제도가 2008. 12. 1에 개편되면서 설립허가주의를 폐지(준칙주의에 의한 등기만으로 설립)하고, 법인의 설립과 공익성 판단을 분리하였음

-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공익인정위원회에 의해 공익성 판단



자료: 国税庁, 『新たな公益法人関係税制の手引』, 2012, p. 2.

3 공익법인의 주식취득 및 보유 완화: 의무지출강화



KIPF 한국조세재정연구원

3. 공익법인의 주식취득 및 보유 완화: 의무지출강화

가. 제도 및 현황

- ◆ (주식취득)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5%를 초과하는 경우에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됨(상증세법 제16조 제2항)
 - 91년에 최초 도입(20%), 94년부터(5%)
 - 성실공익법인의 경우 2008년부터 그 비율을 10%로 확대적용하고 있음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과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한 자선, 장학 또는 사회복지를 목적으로 하는 성실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주식 등의 의결권을 행사하지 않는 경우에는 20%가 적용됨(2018년부터)
 - 문제가 된 사례: 아주대학교 구원재단(공평과세 vs 기부자의 자유)

KIPF 한국조세재정연구원

3. 공익법인의 주식취득 및 보유 완화: 의무지출강화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공익법인의 계열사 주식 보유 현황

집단명	공익법인명	피출자회사명	지분율
삼성	삼성문화재단	삼성물산(주)	0.60
	삼성문화재단	삼성생명보험(주)	4.68
	삼성문화재단	삼성에스디아이(주)	0.57
	삼성문화재단	삼성전자(주)	0.03
	삼성문화재단	삼성증권(주)	0.22
	삼성문화재단	삼성화재해상보험(주)	2.87
현대 자동차	현대차 정몽구 재단	(주)이노션	9.00
	현대차 정몽구 재단	현대글로벌비스(주)	4.46

3. 공익법인의 주식취득 및 보유 완화: 의무지출강화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공익법인의 계열사 주식 보유 현황

집단명	공익법인명	피출자회사명	지분율
금호 아시아 아나	금호아시아나문화재단	금호고속(주)	9.13
	금호아시아나문화재단	금호산업(주)	0.02
	금호아시아나문화재단	케이알(주)	100.00
	금호아시아나문화재단	케이에이(주)	100.00
	금호아시아나문화재단	케이에프(주)	100.00
	금호아시아나문화재단	케이오(주)	100.00
케이티	(재)케이티그룹희망나눔재단	(주)케이에이치에스	100.00
	(재)케이티그룹희망나눔재단	(주)케이티	0.01

3. 공익법인의 주식취득 및 보유 완화: 의무지출강화

- ◆ 대기업집단과 기타 공익법인의 자산구성현황을 보면 총자산 대비 주식 및 출자지분 비중은 대기업집단 공익법인이 42.4%를 차지하고, 기타 공익법인은 4.3%를 차지함(약 9.9배)

자산구성 현황 비교



KIP 한국조세재정연구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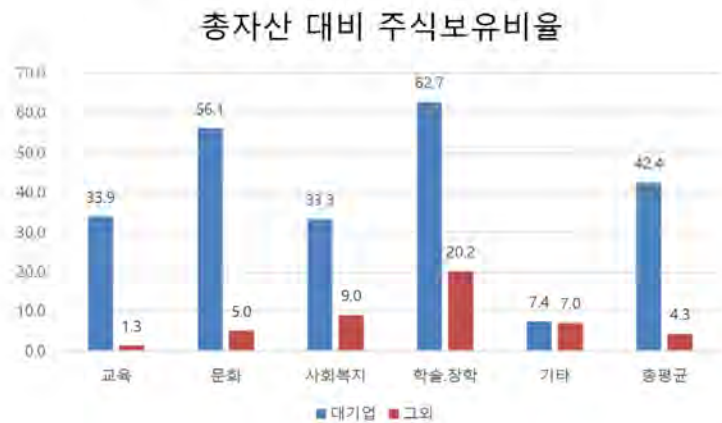
3. 공익법인의 주식취득 및 보유 완화: 의무지출강화

- ◆ (주식보유) 공익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내국법인의 주식을 보유하는 경우에 매년 말 현재를 기준으로 그 주식가액이 공익법인의 총재산가액의 30%를 초과하여 보유할 수 없음(상증세법 제48조 제9항)
 - 회계감사, 전용계좌개설 및 사용, 결산서류 등의 공시를 이행하는 공익법인은 50%까지 허용함
 - 성실공익법인은 제외함
 - 제재(가산세): 매 사업연도 말 현재 초과보유주식의 시가의 5%

KIP 한국조세재정연구원

3. 공익법인의 주식취득 및 보유 완화: 의무지출강화

- ◆ 사업유형별 총자산 대비 주식 보유 비율을 보면 대기업집단의 공익법인은 총자산의 약 50%를 주식으로 보유하고 있음



3. 공익법인의 주식취득 및 보유 완화: 의무지출강화

- ◆ (의무지출)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 등의 5%를 초과하여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성실공익법인은 출연재산가액의 일정비율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해야 함(상증세법 제48조 제2항 제7호)
 - 5%초과의 경우 출연재산가액의 1% 이상, 10%초과의 경우에 출연재산가액의 3% 이상
 - (의무지출대상 확대) 2021년부터 자산 5억원 또는 수입금액 3억원이상 공익법인인 자산가액의 1%
 - 제재(가산세): (사용기준금액 - 직접공익목적사업 사용금액) X 10%

3. 공익법인의 주식취득 및 보유 완화: 의무지출강화

- ◆ 대기업집단 소속 공익법인과 기타 공익법인의 사업비용 구성현황을 비교해보면, 공익목적사업과 관련해서는 대기업 87.1%, 기타 83.9%를 차지함



3. 공익법인의 주식취득 및 보유 완화: 의무지출강화

- ◆ 총자산 대비 공익목적사업비를 보면 대기업 집단 공익법인이 32%를 공익목적사업비로 지출하고 있으며, 그 외 공익법인은 44.2%로 지출하고 있음



3. 공익법인의 주식취득 및 보유 완화: 의무지출강화

나. 해외 사례

◆ 미국의 입법례

- 미국세법상 면세단체가 우리나라의 공익법인과 유사하며, 면세단체는 공공자선 단체와 사적재단으로 구분할 수 있음
 - 공공자선단체는 교회, 학교, 병원 및 부속기관, 주립대학 등을 위해 운영되는 펀드, 정부기관 및 일반대중의 지원으로 운영되는 조직
 - 사적재단은 소수(대중지원금이 총수익의 1/3미만인 경우) 의 출연자(기부)에 의해 설립·운영됨

3. 공익법인의 주식취득 및 보유 완화: 의무지출강화

- 사적재단이 보유한 의결권 있는 주식과 부적격자가 소유한 의결권 있는 주식을 합하여 20%이지만, 예외적으로 특정기업이 제3자에 의하여 유효하게 지배되고 있는 경우에는 35%까지 허용될 수 있음
 - 부적격자: 재단 설립자, 실질적 기증자 및 그 가족, 재단 운영자
- 의결권 있는 주식의 2% 또는 총발행가액의 2% 이내에서 어떤 기업의 주식도 제한없이 보유할 수 있음
- 제재: 보유한도를 초과한 경우 보유주식 가치의 10%가 과세, 초과 부분이 해소되지 않으면 200%의 가산세 부과

3. 공익법인의 주식취득 및 보유 완화: 의무지출강화

◆ 일본의 입법례

- 일본의 경우에 공익인정법 제5조 및 공익인정법정령 제7조에 따라 50%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주식을 보유하는 것은 허용됨
 - 회사법 제108조에 따른 거부권부주식, 동법 제188조에 따른 단원주(일정한 단위 수를 1의결권의 단위로 함)제도를 통해 복수의결권주식과 동일한 효과를 낳고 이로 인해 기업의 경영권 보장이 가능함

3. 공익법인의 주식취득 및 보유 완화: 의무지출강화

◆ 독일의 입법례: 가족재단제도

- 독일의 경우에 주식 취득 및 보유를 제한하고 있지 않지만, 가족재단을 통한 상속재산의 세대이전에 대해 과세를 하고 있음
- (설립이유) 가족재단은 증여자가 사망한 뒤에 발생할 수 있는 상속분쟁을 방지하고 자녀를 재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 설립되는 것으로서 공익법인이 아님
- (상증세법상 입법취지) 상속재산이 가족재단을 통해 세대이전되면서 일회의 상속세를 낸 후에, 한 푼의 상속세도 납부하지 않고 여러 세대에 걸쳐 후손들이 자산으로부터 이익을 향유하는 특권을 누리는 것을 상속세제도의 흠결로 보고, 이러한 방식을 1974년부터 상속세 과세대상에 포함시키게 되었음

3. 공익법인의 주식취득 및 보유 완화: 의무지출강화

- (현황) 현재 이러한 가족재단과 변형된 형태인 이중재단(가족재단+공익재단)이 독일에는 약 500-700개가 있음(예, 보쉬재단)
- (과세방법) 재산이 재단에 처음으로 이전된 날로부터 매 30년마다 증여세 부과
- (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재단의 모든 재산(30년간 가족에게 이전된 급부는 공제되지 않으며, 과세시에 2명의 자녀에게 상속한 것으로 간주하여 그에 해당하는 상속공제만 인정)
- (납세의무자) 납세의무자는 가족재단(사단)이며, 재단의 이사장과 사단의 이사회가 연대의무를 짐

3. 공익법인의 주식취득 및 보유 완화: 의무지출강화

- (법인세, 비례원천징수세) 가족재단은 공익법인이 아니므로 15%의 법인세를 납부해야 하며, 가족재단으로부터 급부를 제공받은 가족 등은 비례원천징수세(25%)를 납부해야 함

3. 공익법인의 주식취득 및 보유 완화: 의무지출강화

다. 개선방안

- ◆ 공익법인이 주식을 취득·보유하는 것은 배당수익을 통해 공익사업을 하거나 시세차익을 극대화 하여 주식을 매각함으로써 얻은 수익을 공익사업에 사용하고자 하는 것임
- ◆ 기부활성화차원에서 주식출연 자체에 대해서는 완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있으나, 기업지배수단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적절한 허용범위를 설정해야 하며, 공익법인 보유주식에 대한 배당수익을 높여 공익사업에 직접사용하도록 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함

3. 공익법인의 주식취득 및 보유 완화: 의무지출강화

- ◆ 출연된 주식에 대한 의결권 행사를 제한하는 방안이 있음
 - 의결권제한은 공익법인을 통한 기업의 지배력 강화를 억제할 수 있다는 점에서 타당한 방법이라고 판단됨
 - 특히 의결권이 없는 자기주식(상법 제269조 제2항)을 공익법인에 출연하여 의결권을 부활시키는 것도 가능하므로 공익법인에 출연된 주식에 한해서는 의결권 자체를 제한하는 것이 필요함
 - 제한 비율과 관련하여 최근에 입법예고된 독점규제법을 참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원칙적으로 제한, 예외적으로 15% 허용)

3. 공익법인의 주식취득 및 보유 완화: 의무지출강화

- 2020. 6. 10 공정거래위원회가 입법예고한 독점규제법 제24조 제2항 신설안에 따르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공익법인에 대해 취득 또는 소유하고 있는 국내 계열회사 주식에 대한 의결권 행사를 원칙적으로 제한하고, 적대적 M&A 방어를 위해 예외적인 경우 의결권 행사를 허용함
 - ① 상장사의 경우 임원임면, 정관변경, 합병 및 영업양도(계열사간 합병 및 영업양도 제외) 등에 한해 특수관계인 합산 15% 허용
 - ② 공익법인이 100%지분을 보유한 계열사의 경우 의결권 행사 허용

3. 공익법인의 주식취득 및 보유 완화: 의무지출강화

- ◆ 출연 주식에 대한 배당 강제를 통해 의무지출확대
- 대기업집단 공익법인 중에서 주식 대비 배당수익이 없는 공익법인은 14개이며, 1%미만은 10개, 1-3%미만은 22개, 3-5%미만은 10개, 5%이상은 9개를 차지함

<기관별 배당수익률 분포>

(단위: 기관수)

0	0~1% 미만	1%이상 ~ 2%미만	2%이상 ~ 3%미만	3%이상 ~ 5%미만	5%이상	총계
14	10	11	11	10	9	65

- 배당수익이 없는 공익법인의 경우에 공익사업비용으로 지출한 금액도 미미하다는 점에서, 공익법인법 제16조(1년 이상 사업실적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설립허가 취소)를 개정하여 1년간의 사업실적보다는 지출비용을 기준으로 판단하여 공익법인의 지위를 박탈시키는 것이 오히려 적절할 것으로 보임

3. 공익법인의 주식취득 및 보유 완화: 의무지출강화

- ◆ 우리나라 공익법인에 대한 주식취득 및 보유 제한은 대기업집단, 즉 재벌의 가족주의로 인해 공익법인을 이용한 대기업집단의 지배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었음
- 이와 같이 대기업집단의 가족주의에 적합한 모델로 독일의 가족재단(사단)을 활용하도록 하는 방안이 있을 수 있음
- 다만 현행 우리나라 민법상 재단제도에서 가족재단을 포섭할 수 있을 지는 심도 있는 고민이 필요함

4 나오는 말



4. 나오는 말

- ◆ 공익법인에게 주어지는 세제혜택은 공익성을 전제로 하고 있으며, 이는 공익성은 공익활동을 통해서 발현될 수 있음
- ◆ 공익법인에 대한 정치한 관리체계(심사기준마련, 심사기관 일원화)를 통해 공익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 기부활성화 측면에서 공익법인에 대한 주식 출연과 보유를 완화하는 대신에 의결권 제한, 고배당을 통한 의무지출확대를 제안함
- ◆ 민법상 재단의 허용범위를 확대하여 독일의 가족재단 형태의 도입도 고려해볼 수 있음

감사합니다

